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5월 30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중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연세대 박길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GE코리아 강석진 사장, 매일경제 강응선 수석논설위원, 건양대 김진국 교수, KDI 성소미 연구위원,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 삼성전자 이경훈 상무,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성환 시민권익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총괄정책과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박용성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의 제안설명, 지정 토론참가자들의 지정토론과 일반청중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동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내용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운영 모범기업에 대한 경쟁당국의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희망하였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임직원들의 행동규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인 **GE코리아 사장**은 세계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인 자유경제 공정경제를 지켜 나가야 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은 기업체들이 내부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P의 도입은 기업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업이 스스로 CP를 만들어 지킨다면 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사장은 다국적 기업인 GE의 CP도입의 사례를 들면서 GE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세계시장의 모

든 공정거래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수석 법률담당자가 겸직하며, 각 사업부서에 법률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책임자나 감사책임자가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연락처제도'를 통해 상담원과 전화 상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훈 삼성전자 상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의 내용 중 CP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은 이미 금융이나 보험업법에서 실행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와 내부통제제도가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행동지침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기업들로 하여금 자체 행동규범에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사항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CP는 다소 절차적인 부분을 강조한 면이 있는데, 이보다는 Dos and Don'ts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법 위반 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미 KDI 연구위원은 CP 도입으로 소송비용의 하락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니터링 비용의 절감,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CP를 사내 법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모범 편람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소미 연구위원은 자문, 상담, 정보제공, 의견제시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정착을 위해 글로벌 스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법에의 운용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국 건양대 무역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에 의한 절대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용기업에 대한 자료·정보제공, 사전심의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에 Dos and Don'ts와 같은 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가급적 외국사례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행동규범을 제정해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동규범을 위반했을 때에는 강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며 내부직원들에 의한 통제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내부통제는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세리 법무법인 윤촌 변호사는 CP는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비용 절감 및 법 위반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이 가능하고 또한 경쟁당국의 입장에서도 집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CP를 채택하고 실행하는데 각종의 지원책이 보강되어야 하므로 한국공정거래협회에 CP를 지원,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경쟁당국은 제재시 C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환 YMCA시민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CP는 세계적 추세이며, 비용절감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은 단순한 권고의 성격보다는 미준수시 제재가 가해지는 강제력이 있어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은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른 토론자들의 발언에 동감하며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은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Dos and Don'ts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은 빠른 시일 내에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모범운영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공청회에 참가한 기업체의 임직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일반조항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가능하며 기업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사전상담과 모범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포상제도의 도입 및 CP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접수시 해당업체가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본 협회, 국민생활 및 유통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상공회의 소 중회의실에서 국민생활관련(장의업체, 예식장, 건강식품관련업체) 및 유통관련(백화점, 할인점) 22개 업체에서 207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업기쉽 사무관, 표시광고과 정정길 서기관, 유통거래과 여형동 서기관 등이 강사로 초빙되어 일반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법 해설, 부당한 경품류 제공 및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쟁촉진과 업 사무관은 일반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과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예식장의 경우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종의 경우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위한 부당염매, 부당한 고객유인의 유형 및 기준, 부당한 경품제공, 예식장, 장례업체에서의 드레스, 사진촬영, 수의 등의 끼워팔기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표시광고과의 정 서기관은 지난해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21개 업종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것은 특히 가구나 귀금속 같이 일반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거래과 여 서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적인 직권조사의 실시로 백화점의 경우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할인점의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등 관련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광고비 전가,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강요, 판매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 등 종전 백화점에서 행해지던 불공정거래행위가 할인점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할인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조사를 병행하여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까르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유통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질의 및 응답

문 소비자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 입점사업자가 5천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백화점이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지?

답 백화점은 수탁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백화점이지고 입점사업자는 납품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입점사업자와 백화점을 하나의 사업자로 봐야 하므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제7조의 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문 경쟁사로의 가격 노출을 꺼려 광고전단에 일부제품의 가격은 표시하고 일부제품의 가격은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답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지 가격표시 실시여부 자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자사에 유리한 품목만 가격을 표시하여 전체 품목이 타사에 비해 싸다는 오인을 소비자에게 불러 일으킬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것이다.

문 장의업의 경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수의에 관하여는 중요정보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목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데, 목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표시·광고의 기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구업의 경우를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모든 업종의 모든 품목을 다 기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동 고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범인 표시·광고법으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관을 가구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각종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년, '9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2001. 1. 16. 개정)과 동 시행령(2001. 3. 27. 개정), 하도급법, 약관법(2001. 3. 20. 개정), 표시광고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제·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법률과 시행령 및 관계법령과 해당 심결사례를 연계시킴으로써 법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법규집의 판매가는 30,000만원(비회원사 40,000만원)이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776-8870~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관련법규 목차 안내

I. 公正去來法

1.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2001. 1. 16. 개정>및시행령<2001. 3. 27. 개정>
2. 告示·指針 등
 - 1)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의 審查基準<2000. 9. 8. 제정>
 - 2) 企業結合의申告要領
 - 3) 企業結合審查基準
 - 4) 持株會社關聯規程에 관한解釋指針<2001. 5. 2. 개정>
 - 5) 持株會社의設立·轉換의申告및持株會社의株式所有現況등의報告에 관한要領<2001. 5. 개정>
 - 6) 企業結合申告規定違反事件에 대한過怠料賦課基準

- 7) 企業結合關聯是正措置不履行에 따른履行強制金賦課基準<2000. 12. 23. 제정>
- 8) 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 9) 入札秩序公正化에 관한指針
- 10) 事業者團體活動指針
- 11) 大規模小賣店業에 있어서特定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및基準指定告示
- 12) 景品類提供에 관한不公正去來行爲類型基準<2000. 4. 25. 개정>
- 13) 竝行輸入에 있어서의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告示
- 14)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不公正去來行爲의基準指定告示
- 15) 大規模企業集團의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審查基準

- 16) 不當한支援行爲의審查指針
- 17) 大規模內部去來에 대한理事會議決 및 公示에 관한規程<2000. 4. 1. 제정>
- 18) 國際契約上의不公正去來行爲등의類型 및 基準
- 19) 國際契約審查要請要領
- 20) 公正去來委員會會議運營 및 事件節次 등에 관한規則<2000. 12. 5. 개정>
- 21) 法違反事實의公表에 관한運營指針 <2000. 6. 13. 개정>
- 22)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등에의 한利害關係人等에 대한經費支給規程
- 23) 過徵金賦課細部基準等에 관한告示
- 24) 滯納過徵金에 대한加算金料率告示
- 25)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違反行爲의告發에 관한公正去來委員會의指針
- 26)公正去來委員會訴訟事件受任辯護士報酬規程
- 27) 還給過徵金에 대한加算金料率告示 <2001. 3. 27. 제정>
- 28) 知的財產權의不當한行使에 대한指針 <2000. 8. 30. 제정>

II. 下都給法

1.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指針 등
 - 1) 어음에의한下都給代金支給時의割引率告示<2000. 5. 23. 개정>
 - 2) 製造委託의對象이되는物品의範圍告示
 - 3) 先給金等遲延支給時의遲延利子率告示
 - 4)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告示 <2000. 10. 13. 개정>
 - 5) 下都給去來公正化指針<2000. 3. 29. 개정>
 - 6) 下都給法違反事業者에 대한過徵金賦課指針

III. 約款規制法

1. 約款의規制에 관한法律

IV. 表示·廣告法

1. 表示·廣告의公正化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指針 등

- 1) 不當한表示·廣告行爲의類型 및 基準指定告示
- 2) 注油所등石油販賣業에 있어서의供給者表示에 관한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 및 基準
- 3) 住宅의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4) 環境關聯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5) 商街등의分讓 및 貸貸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6) 銀行등의金融商品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7) 保險商品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8) 受賞·認證등의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9) 通信販賣表示·廣告에 관한審查指針
- 10) 廣告實證에 관한運營指針<2000. 12. 22. 개정>
- 11) 臨時中止命令에 관한運營指針
- 12) 重要한表示·廣告事項告示<2001. 5. 2. 개정>
- 13) 電子去來消費者保護指針<2000. 1. 6. 제정>
- 14) 訂正廣告에 관한運營指針<2000. 12. 22. 제정>
- 15) 消費者被害一括救濟에 관한運營指針 <2001. 3. 31. 제정>

V.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의 적용 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 관 한法律

VI. 訪問販賣등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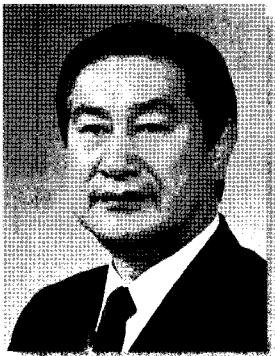
VII. 割賦去來에 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I. 公正去來委員會運營

- 1.公正去來委員會職制<2000. 2. 28. 개정>
- 2.公正去來委員會職制施行規則<2000. 5. 19. 개정>
- 3.公正去來委員會委任專決規程<2000. 11. 15. 개정>
- 4.地方事務所業務處理指針
- 5.公正去來委員會所屬公務員人事管理規程

회·원·사·소·식

신규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주택공사

대표 권해옥

주택건설·임대·관리·안전진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고려아연주식회사

대표 최창근

제조업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번지



S-Oil주식회사

대표 김선동

석유정제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빌딩